

#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를 위한 제도개발 연구

◇... 이 연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아래 1993년  
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로 이현청(대교협 고등교육연구  
소장·연구책임자)·박진규·나민주·정기수·성열관 등에 의  
해 수행된 것이다. 지면 관계상 그 내용을 전부 소개하지  
못하고 목차 및 주요 부분만을 게재한다. 편집자...◇

## 1. 목 차

### I. 序 論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II. 大學教授評價의 理論的 基底

1. 교수평가의 기원 및 당위성
  - 가. 교수평가의 기원
    - 나. 교수평가의 당위성
2. 교수평가의 내용
  - 가. 교육활동 평가
  - 나. 연구 평가
  - 다. 사회봉사 평가
  - 라. 교내 봉사활동 평가
3. 교수평가의 방법
  - 가. 수업평가의 방법

### 나. 연구평가의 방법

### 다.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 III. 外國 大學의 教授評價制度

1. 외국 대학의 교수업적평가제의 유형
2. 미국 대학의 교수업적평가의 사례
  - 가. U. C. Berkeley 대학교
    - 나. 남일리노이 대학교
    - 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 라. 미조리 대학교
    - 마. 미국 대학의 교수업적평가제도의 특징

### IV. 國內大學의 教授業績評價制 實施 現況

1. 개 황
2. 대학별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내용
  - 가. P공과대학교

- 나. Y대학교
- 다. K대학교
- 라. S대학교

#### V. 大學教授業績의 評價道具

1. 교수업적 평가도구의 구성
2. 교육영역의 평가도구
3. 연구영역의 평가도구
4. 봉사영역의 평가도구
5. 개별대학 적용을 위한 참고사항

#### VI. 大學教授 業績評價의 體制와 活用方案

1. 교수업적평가의 운영체제
  - 가. 교수업적평가조직
  - 나. 교수업적평가 지원조직
  - 다. 교수업적평가의 내용 및 절차
  - 라. 대학유형별 평가 운영
2. 교수업적평가의 활용방안

#### VII. 要約 및 提言

1. 요약
  -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나. 대학교수 업적평가의 이론적 기저
  - 다. 외국 대학의 교수평가제도
  - 라. 국내 대학의 교수업적평가제의 실시현황
  - 마. 대학교수 업적의 평가도구
  - 바. 대학교수 업적평가의 체제와 활용 방안

#### 2.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1> 미국 대학의 수업평가 설문지(I)
- <부록 2> 미국 대학의 수업평가 설문지(II)
- <부록 3> 교수업적평가 지침  
(국내 국립대학의 예)
- <부록 4> 교수업적평가 지침  
(국내 사립대학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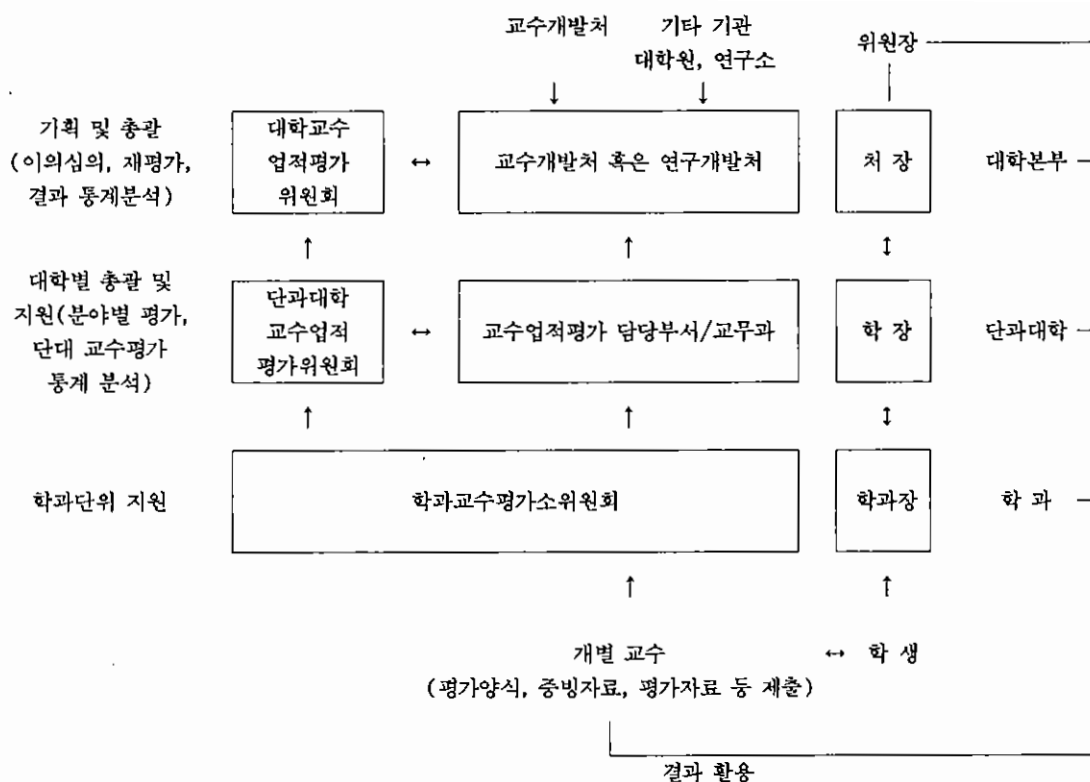
## 2. 대학교수 업적평가의 운영체제

교수의 업적을 신뢰성 있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운영체제의 정립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교수업적평가를 위한 운영체제는 크게 평가 절차와 관련된 '평가 조직', 평가의 분석 및 개발과 관련 '평가개발조직', 그리고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 개발을 지원하고 평가 자체를 재정립토록 하는 '평가 활용 및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 1) 교수업적평가조직

교수평가조직은 교수업적평가를 실제로 실시하는 데 활용될 기본 체제로서 대학 본부, 단과대학, 학과간에 설치된 기본 골격을 말한다 (<그림 1> 참조). 이와 관련해서 대학 본부 수준에서는 교수개발처 혹은 연구개발처 등에서 관장토록 하고 단과대학 단위에서는 교무과에서 관장토록 한다. 그리고 학과 단위에서는 학과장 혹은 학과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한다.

이들 대학 전체 수준과 단과대학 및 학과간에는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조직과 함께 의사결정 등의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케 한다. 전체 대학 단위와 단과대학 그리고 학과 단위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행정조직 체제와 긴밀한 협조 하에 평가의 내용 및 항목간의 비중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가중치, 평가의 절차 및 운영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며, 본부 단위의 교수개발처는 처장의 책임 하에 단과대학 단위의 평가 부서와 학과 단위의 관련자 등의 협력 하에 교수업적평가의 운영 및 실행 책임을 진다. 교수업적 평가조직은 교원인사규정 등 제반 법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업적 평가조직의 체제를 도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학교수 업적평가의 조직 체제

각 대학은 대학의 설립 목적, 규모 및 교수 업적평가의 활용 방안에 따라 각 대학 실정에 맞는 교수업적평가를 관장할 부서를 설치·운영한다. 즉, 대학교수업적평가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될 수 있다. 대학이 안고 있는 제반 특성과 실정에 따라 수업 평가만을 실시할 수도 있고 연구업적평가만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연구 및 수업 그리고 사회 봉사 등의 종합적인 교수업적 평가를 공히 활용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그림 1〉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교수업적평가 조직체제의 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을 제시한다.

○ 교수업적평가를 위한 교수개발처나 연구개발처는 대학 전체의 교수업적평가의 기획, 실행 및 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교수업적평가를 관장할 대학 단위의

총괄 부서는 연구개발처 또는 교수개발처(division of faculty development)로서 처장이 총괄 책임을 맡고 교수평가지원체제를 관장할 1인과 교수평가 결과의 활용 및 개발을 관장할 1인 등의 연계 체제로 운영된다.

○ 실질적인 교수업적평가를 관장하는 단과대학 단위의 평가담당부서는 기존의 단과대학 교무과의 기능 중 일부를 독립시켜 관장토록 하며, 기존의 교무과 기능을 강화하여 교수업적평가를 관장토록 하는 경우에는 교무과 내에 교수개발 책임부서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단과대학 단위의 교수업적평가는 단과대학에 설치된 기존의 교무과를 강화하여 교수 개발과 관련된 부서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특히 단과대학 단위의 교수업적 평가부서는 대학 본부의 기획 집행 등 기본 방향 설정에 따라 학과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실제적으로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교수업적평가의 지원 체제인 교수업적평가 지원 부서(예컨대 교수업적평가분석실)로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 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수립하여 평가 집행부서에서 이를 집행토록 하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부총장 혹은 교수개발처 또는 연구개발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단과대학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직 위원인 단과대학장 이외의 평교수 중에서 일정 비율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는 업적관리평가의 기본원칙, 서식의 결정, 관련 규정의 개폐, 업적우수교수의 선정 및 예우, 업적집 발간 계획, 연구보조비 지급 원칙 등을 심의한다. 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혹은 교수개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학문계열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계열별 평가 절차와 영역 그리고 영역별 가중치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단과대학 단위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 전체에서 설정된 기본골격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세칙 등을 관장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각 단과대학이 단과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장을 위원장으로 학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는 업적관리서식의 기재 항목, 업적인정의 기준 설정, 업적평가의 기준 설정과 심사, 계열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업적우수교수의 선정 및 추천,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 자료를 검토·평가하고

결과를 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 및 개별 교수에게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단위학과는 단과대학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학과는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수업적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과대학 단위의 교수업적평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수평가를 실시토록 지원한다. 즉, 개별 학과는 학과 교수 중 교수업적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수업적평가 업무를 지원토록 하며 대학 단위와 단과대학 단위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와도 평가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혹은 대학교수개발위원회)는 단과대학위원회와 협조하여 평가 절차, 평가 자료,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를 조정하며 전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수 개발 자료로 활용한다. 또 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회(혹은 교수개발위원회)는 평교수 협의기구와 사안에 따라 교수업적평가의 시행에 관해 협의·조정할 수 있다.

○ 교수 업적평가 기구는 원칙적으로 교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 직원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 2) 교수업적평가의 지원조직

교수업적평가의 지원조직은 교수업적 평가조직에서 시행된 평가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토록 분석·검토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교수업적평가 지원조직은 대학부설 전산소와 평가관련 연구소 및 교수개발센터 등이다. 이러한 지원조직은 각 대학에서 실시된 교수의 수업평가서와 연구업적평가서, 그리고 사회봉사평가서 등을 전산 처리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교수업적평가 지원조직으로서 대학부설 전산소와 평가관련 연구소 및 교수개발센터 등을 들 수 있고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방안을 연구·지원하도록 한다. 교수업적 평가 결과는 전산 처리하여 그 결과가 해당 교수와 학과장, 학장 등에게 보고되도록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의 상설기관으로 교수개발센터(Center for Faculty Development)를 설치하여 국내외의 교수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분석·활용토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교수개발센터는 교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연구 분석하며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대학 전체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교수개발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교수개발센터는 대학전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차원, 개별 교수의 차원, 학과의 차원에서 연구, 봉사, 교육 영역별 분석 자료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 3) 교수업적평가의 내용과 절차

교수업적평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연말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야별 평가점수를 누적 점수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수 업적평가는 크게 개별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의 3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교육 분야의 평가 대상에는 수업 평가, 수업 담당, 과목 및 시간수, 석·박사 배출 실적, 졸업논문 지도 실적, 교육 매체 개발, 수업 계획서 및 분담 학생 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는 수강학생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필수 선택강좌 여부와 전공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는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과는 교수에게 통보되어 수업개발과 강좌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는 수업 일반, 교육방법 및 수업기법, 지원체제, 그리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및 태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평가는 학기말에 1회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 개인과 인사위원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연구 분야의 평가는 전공 분야의 특성 여하에 따라서 다양한 항목이 요구되며 인문사회계, 이공계, 의학계, 예체능계 등의 분야별 연구업적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봉사 분야의 평가항목은 학회활동, 학내외의 위원회 및 보직활동,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원,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자문 강연, 사회단체 및 언론매체참여 활동 등 교내외의 활동을 망라하여 단과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수업적평가시 각 대학의 특성 여하에 따라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교 내의 단과대학별 특성에 따라라도 평가영역별 가중치를 둘 수 있다. 다음 <표 1>에서는 연구중심 대학, 학부중심 대학, 교육대학, 신학대학, 개방형 대학 등의 대학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영역별로 업적 최저기준을 예시 설정하였다.

교수업적평가의 결과에 의의가 있을 시에는 재심을 2차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 제1단계에서는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혹은 교수개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교수 본인이 직접 동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 4) 교수업적평가의 활용방안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업적평가의 양식과 절차를 설정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활용은 자체 대학의 차원, 지역 연합의 차원, 유형별 연합의 차원, 국가적 차원 및 교수 개인의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교수업적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교수의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여 양질의

(표 1) 대학특성에 따른 최저기준의 설정

특성별 최저 기준요인	연구 중심대학	학부 중심대학	교육대학	신학대학	개방형대학 (산업대학)
연구	2년간 200%	2년간 150%	3년간 150%	3년간 100%	3년간 100%
교육	법정시수 이상 강의 (낮은 가중치)	법정시수 이상 강의 (높은 가중치)	법정시수 이상 강의 (높은 가중치)	법정시수 이상 강의 (높은 가중치)	법정시수 이상 강의 (높은 가중치) (실습위주 강조)
봉사	대학별 특성에 따른 적용 (낮은 가중치)	대학별 특성에 따른 적용 (낮은 가중치)	대학별 특성에 따른 적용 (낮은 가중치)	대학별 특성에 따른 적용 (높은 가중치)	대학별 특성에 따른 적용 (높은 가중치)
강조 영역	연구 최우선	교육 최우선	교육 최우선	교육/봉사 동시 우선	실습위주교육 산학협동 최우선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수업적평가의 활용 방안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활용은 대학과 개인 교수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교수업적평가의 자료는 승진 심사, 재임용 심사, 우수 업적 교수 선정, 정년 보장 심사, 연구비 지급 및 연구 교수 선정 그리고 강의 경감 등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신규 임용, 연구실적 심사 기준에 준하였던 교수의 승진, 재임용 및 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활용하되 명예위주의 보상 방안과 함께 연구비의 차등 지원, 특별 연구년의 부여, 대학교수(university faculty) 칭호의 부여, 특별 해외시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연구, 교육, 봉사 등의 영역별로 분석하거나 종합하여 개별 대학, 개별 학과, 그리고 대학 전체의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활용방안은 교내 연구비 배정, 교수 충원, 학생 증원, 예산 증액, 연구년제의 배정, 설강 과목의 조정 등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개인 교수의 차원에서

는 업적미진 교수의 지원 자료로서뿐만 아니라 우수교수 발굴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업적이 미진한 교수의 경우에는 업적미진의 영역을 스스로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고 우수 교수들의 경우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교수 백서 등으로 장려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본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타 대학으로의 진출 및 전입시에는 호봉 책정, 임용 등의 증거 자료로 활용토록 상호 인정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대학별 특성과 유형 그리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수업적평가의 영역별 가중치를 비롯한 내용과 운영 절차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 지역 내의 대학간, 유형별로 유사한 대학간에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체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체제를 고려할 수 있다.

### 3. 대학교수 업적평가의 기준

교수업적 평가기준은 각 대학들이 해당 교수의 업적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업적의 영역을 크게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으로 구분하고 모든 종류의 업적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각 영역별로 가능한 모든 항목을 열거하였다.<sup>1)</sup> 대학에 따라서는 이 가운데서 핵심적인 항목을 다시 추출하거나 몇 개 항목을 추가하여 교수업적을 평가할 수도 있다.

### 1) 교육영역의 평가기준

교육업적은 수업담당실적,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발 실적, 석·박사학위 배출실적, 석·박사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실적, 기타 학생지도 실적, 교육관련 수상 및 공훈 실적, 교육경력, 그리고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의 결과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교육업적 내용과 가중치는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도 교수의 교육업적에 포함하였으며, 5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sup>2)</sup>

### 2) 연구영역의 평가기준

연구업적은 저서, 번역서, 논문, 연구보고서의 발간, 학술회의 발표, 특허 획득, 전시, 발표, 공연, 창작, 연구활동, 연구관련 수상 및 공훈 실적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업적 내용과 가중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논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열간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 SCI 등에 국내 우수 학술지의 반영 곤란, 국내 학술연구의 인정 등을 고려하

여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간의 비중을 1:1.5 정도로 하였다.

### 3) 봉사영역의 평가기준

대학교수의 봉사업적은 교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학내 및 대학외에서 이루어지는 봉사(service) 활동으로서 대학내 봉사에는 각종 행정보직, 위원회 활동, 시험출제 및 채점, 학생단체 지도 등이 포함되며, 대학외 봉사는 정부 및 공공단체와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 자문, 지도 활동, 국제 혹은 국내 학회 활동, 국제기구활동, 각종 시험 출제 및 채점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업적 내용과 가중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교수업적평가제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교수들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해당대학 내에서 단과대학별로 위원들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 '교수업적 평가위원회' '교육(연구, 봉사)업적 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교수업적 평가규정'을 제정하되, 전산, 통계 및 평가 관련 전공 교수들을 각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 교수업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과대학별, 학문계열별, 학과별 혹은 전공영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수들을 동일한 척도에 의해서 그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1) 본 연구에서는 교수업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수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종합하여 재조직하였다. 또한 교수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항목구성과 가중치에 대한 전문적 심사 및 판단 과정을 거쳤다. 연구문헌들은 교수평가, 수업평가, 연구평가, 대학평가인정제, 대학의 질(quality), 수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 등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및 해외 대학의 교수업적 평가 사례도 분석 반영하였다. 다만 국내 대학의 경우, 교수업적평가의 도입단계에 있으므로 교수업적 평가제도와 함께 신규임용 및 승진 심사, 정년보장, 연구년제 대상교수 심사,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2) 연구보고서의 <부록 1>에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서'의 기본 양식이 제시되어 있다. 수업 종료 경 일정 시점을 정하여(종강 이전의 수업시간 혹은 기말고사 이후) 과목을 담당한 교수 개인이 이 수업 평가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작성된 평가서를 수집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한다.

〈표 2〉 교육영역의 교수업적 평가기준

항 목	업 적 내 용	가 중 치	원 점 수	업적점수 <sup>1)</sup>
1.00	○ 교육 업적			
1.10	○ 수업담당실적			
1.11	학점부여 담당과목(학점수)	10	( )학점	( )점
1.12	학점 부여 않는 수업(과목수)	5	( )과목	( )점
1.13	연수교육(과목수)	5	( )과목	( )점
1.20	○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발 실적			
1.21	수업계획서의 작성 및 배포(과목수)	2	( )과목	( )점
1.22	새로운 과목(실험적인 강좌) 개발	10	( )과목	( )점
1.23	교육과정의 개발	10	( )과목	( )점
1.24	새로운 학위과정의 개발	10	( )과목	( )점
1.30	○ 석·박사학위자 배출실적			
1.31	석사학위자 배출 실적(학생수)	10	( )명	( )점
1.32	박사학위자 배출 실적(학생수)	30	( )명	( )점
1.40	○ 석·박사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실적			
1.41	석사학위논문 지도학생수	5	( )명	( )점
1.42	박사학위논문 지도학생수	10	( )명	( )점
1.43	석사학위논문 심사실적(학생수)	1	( )명	( )점
1.44	박사학위논문 심사실적(학생수)	2	( )명	( )점
1.50	○ 기타 학생지도 실적			
1.51	학사과정학생 지도실적(학생수)	1	( )명	( )점
1.52	학생 개별지도(연구·실습지도 등)	1	( )명	( )점
1.53	졸업생 지도: 취업 알선, 기타	1	( )명	( )점
1.60	○ 교육관련 수상 및 공훈 실적			
1.61	국제단체에서 수여한 상	30	( )건	( )점
1.62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수여한 상	20	( )건	( )점
1.63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10	( )건	( )점
1.70	○ 교육 경력			
1.71	현 직급내 교육경력(재직기간)	1	( )년	( )점
1.72	박사학위 취득후 교육경력(현 직급내)	1	( )년	( )점
1.80	○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의 결과 (*별도의 수업평가서에 의함)	1	(50점만점)	( )점

\*주: 1) 업적점수 = 원점수 × 가중치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있다. 최소한 단과대학, 더 나아가서는 학과별로 척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교수업적평가제의 어느 단계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하여 자료의 수집이나 처리 단계가 아니라, 교수업적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단과대학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최종적인 판정을 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다.



(표 3) 연구영역의 교수업적 평가기준

항 목	업 적 내 용	가 중 치	원 점 수 <sup>1)</sup>	업적점수 <sup>2)</sup>
2.00	○ 연구업적			
2.10	○ 저서			
2.11	국제적 수준의 전문서적	200	( )권	( )점
2.12	국내 전문서적	150	( )권	( )점
2.13	전공과목 교과서	120	( )권	( )점
2.14	개정판	50	( )권	( )점
2.15	자료집	50	( )권	( )점
2.20	○ 번역서			
2.21	전문서적 번역서	100	( )권	( )점
2.22	전문서적 편역서	100	( )권	( )점
2.30	○ 논문			
2.31	국제 학술지 (*저명 학술지는 50점을 추가할 수 있음)	150	( )편	( )점
2.32	국내 학술지 (*저명 학술지는 50점을 추가할 수 있음)	100	( )편	( )점
2.33	석사 학위논문	100	( )편	( )점
2.34	박사 학위논문	200	( )편	( )점
2.35	대학내 논문집	30	( )편	( )점
2.36	기념논문집	20	( )편	( )점
2.37	각종 정기간행물, 논평, 서평, 해설 등	5	( )편	( )점
2.40	○ 연구보고서			
2.41	정부기관 연구보고서	100	( )권	( )점
2.42	외부 연구소 연구보고서	100	( )권	( )점
2.43	교내 연구보고서	50	( )권	( )점
2.50	○ 학술회의 Proceeding			
2.51	국제 학술회의 주제·초청강연	30	( )편	( )점
2.52	국제 학술회의 주제발표	100	( )편	( )점
2.53	국제 학술회의 토론발표	20	( )편	( )점
2.54	국내 학술회의 주제·초청강연	15	( )편	( )점
2.55	국내 학술회의 주제발표	50	( )편	( )점
2.56	국내 학술회의 토론발표	10	( )편	( )점
2.60	○ 전시, 발표, 창작, 특허 등			
2.61	전시회	100	( )건	( )점
2.62	발표회	100	( )건	( )점
2.63	연주회(음악회, 오페라 포함)	100	( )건	( )점
2.64	문학작품(단행본)	100	( )권	( )점
2.65	문학작품(문예지)	80	( )편	( )점
2.66	건축 및 하드웨어 설계	100	( )건	( )점
2.67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100	( )건	( )점
2.68	국제적 특허	150	( )건	( )점
2.69	기타 특허	100	( )건	( )점
2.70	○ 연구 활동 <sup>3)</sup>			
2.71	연구비 수혜 총액(5,000만원당) (* 5천만원당 10점으로 계산함)	10	( )5천만원	( )점
2.72	연구계약 수주건수(해외)	10	( )건	( )점
2.73	연구계약 수주건수(국내 교외)	6	( )건	( )점
2.74	연구계약 수주건수(교내)	2	( )건	( )점
2.75	진행중인 연구건수(해외지원연구)	5	( )건	( )점
2.76	진행중인 연구건수(국내 교외지원연구)	3	( )건	( )점
2.77	진행중인 연구건수(교내 지원연구)	1	( )건	( )점
2.80	○ 연구관련 수상 및 공훈 실적			
2.81	국제 학회 및 단체에서 수여한 상	150	( )건	( )점
2.82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수여한 상	100	( )건	( )점
2.83	국내 학술 및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70	( )건	( )점

\*주: 1) 2.xx의 모든 항목에서 원점수는 단독업적의 경우 100%로 하고, 공동업적인 경우에는 2인 공동업적은 70%, 3인 공동업적은 50%, 그리고 4인 이상 공동업적은 3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업적점수 = 원점수 × 가중치

3) 연구활동관련 중 2.72~2.74항목과 2.75~2.77항목은 동일년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예: 1994년에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2.73항목에만 기재하고, 2.76항목에는 기재하지 않음).

(표 4) 봉사영역의 교수업적평가표

항 목	업 적 내 용	가 중 치	원 점 수	업적점수 <sup>1)</sup>
3.00	○ 봉사업적			
3.10	○ 대학내 봉사			
3.11	행정보직(학.처장급)	50	( )전	( )점
3.12	행정보직(학과장급)	30	( )전	( )점
3.13	부설기관 활동(연구소장, 부속기관장급)	30	( )전	( )점
3.14	부설기관 활동(부장급)	20	( )전	( )점
3.15	각종 위원회(위원장)	30	( )전	( )점
3.16	각종 위원회(위원장, 위원, 간사 등)	20	( )전	( )점
3.17	각종 시험 출제위원	10	( )전	( )점
3.18	각종 시험 채점위원	2	( )전	( )점
3.19	학생단체 지도교수	20	( )전	( )점
3.20	○ 교외 봉사			
3.21	정부관련조직 행정활동(기관장급)	30	( )전	( )점
3.22	정부관련 위원회 활동	20	( )전	( )점
3.23	대학평가인정제 관련 활동	20	( )전	( )점
3.24	민간단체 및 기업관련 활동 (사회문화단체, 운동협회, 장학재단 등)	10	( )전	( )점
3.25	국제 학회(임원)	30	( )전	( )점
3.26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	10	( )전	( )점
3.27	국내 학회(임원)	10	( )전	( )점
3.28	국내 학술지 편집위원	5	( )전	( )점
3.30	○ 기타 봉사 활동			
3.31	국제 기구 및 기관 활동	30	( )전	( )점
3.32	각종 국가고사 출제위원	10	( )전	( )점
3.33	각종 국가고사 채점위원	2	( )전	( )점
3.34	기타 시험 출제위원	5	( )전	( )점
3.45	기타 시험 채점위원	1	( )전	( )점
3.40	○ 봉사활동관련 수상 및 공훈 실적			
3.41	국제단체에서 수여한 상	30	( )전	( )점
3.42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수여한 상	20	( )전	( )점
3.43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10	( )전	( )점

\*주 : 1) 업적점수 = 원점수 × 가중치

#### 4. 제 언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관건은 교수 집단의 책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점검 기제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자율적인 질(quality) 점검기제의 대표

적인 예가 대학교수들의 교수업적평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수업적평가의 국내외 대학 사례, 운영체제, 평가기준 등을 감안해 볼 때 평가자,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은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수업적 평가영역 중 수업평가 부분은 평가자인 학생들의 평가 의식과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대학 내의 평가풍토(evaluation-climate)를 감안하며, 교수업적평

가의 모형은 대학 스스로 설정하여 자율적이고 다양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학의 특성과 설립 취지 및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절차 및 활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업적 평가영역이나 사회 봉사 영역 혹은 수업 평가만을 그 내용으로 다룰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업적평가의 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대학 내에서도 평가대상별(예컨대, 신입 교수와 부교수 이상) 특성에 따라, 단과대학별 교육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유형별로 유사한 대학간, 지역 내에 위치한 대학간의 전출 전입시 교수 임용의 준거 자료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가 결과의 대학간 공동 활용 체제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 교수업적평가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관과 각 단위대학 차원의 부서가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수업적평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향후 업적관리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동료에 의한 평가(peer

evaluation) 제도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수업적평가의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환경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 중의 하나는 종신제, 교수제, 교수계약제와 한시적 임용제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임용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교수업적평가의 목적은 통제와 관리라기보다는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제로서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교수 스스로의 교육 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의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학에서의 교수업적평가는 교수들의 관심과 특성에 따라 연구지향 교수(research-oriented faculty), 교육지향 교수(teaching-oriented faculty), 그리고 봉사지향 교수(service-oriented faculty) 등으로 교수를 특성화하는 데 기여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들 스스로의 자기 개발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 교수업적평가는 연구의 질, 교수의 질, 그리고 봉사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교수 스스로도 능력과 성취에 의해 쳐우될 수 있는 준거 기제가 되어야 한다. ■